

방재시험연구소(FILK), 국가 공인시험 ·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FILK가 획득한 국가공인시험 · 검사기관 지정마크〉



〈지정서 전달 장면〉

URE타결, WTO출범으로 이제 시험, 검사업무도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어 시험 · 검사기관이 품질관리체계, 시험설비, 인적요소 등 시험, 검사능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지 못하면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 : 이하 FILK)는 1995. 9. 28자로 화재저항도(내화시험) 등 10항목에 대해 KOLAS(공업진흥청내 시험 · 검사기관 인정기구)의 지정을 획득, 공인 시험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인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음은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제도와 할 수 있는 공인시험 · 검사기관제도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알기쉽게 설명해 놓은 글이다.

〈 최 문 수 / 기획실 〉

■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란?

공인 시험·검사기관제도(Laboratory Accreditation System)란 국가적 권위를 부여 받은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가 시험·검사기관의 임의적 신청에 따라 시험·검사능력을 공인된 평가기준(ISO Guide 25 및 58, 시험·검사기관 공인에 관한 운용규칙 등)에 의거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며, 시험·검사기관을 표준화하여 그 System을 품질관리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초기에 이 제도는 각 나라시

험·검사기관의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업기반 구축과 상품의 원활한 유통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었으나, 최근 국제무역에서 자국내 산업의 보호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이중검사와 독자적으로 규정한 까다로운 검사기준 적용 등에 대한 기술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진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시행된 제품 인증(Product Certification) 및 ISO 9000시리즈에 의한 System인증과 병행하여 보완 시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제도보다도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신뢰도 향상의 접근방법으로 인식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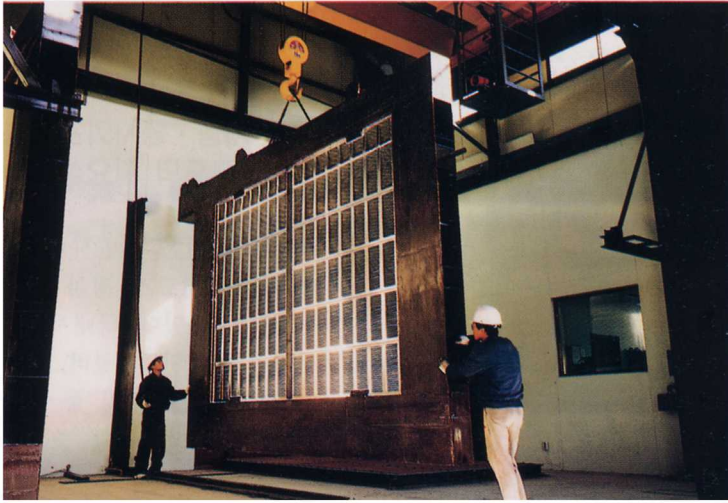
있다.

■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 제도의 필요성

세계의 현실은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국내시험·검사기관들이 인력, 설비, 환경의 확충과 시스템관리 등 시험·검사결과를 좌우하는 요인들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키지 못할 경우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더욱이 세계 각국은 WTO의 공식 출범에 따라 표면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자국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안전과 환경보호 등을 내세워 수입품에 대한 검사기준의 강화와 독자적 시험·검사방법을 기술적으로 적용하여 무역장벽을 은연중에 높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인 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의 국내기반을 정착시켜 국가간 또는 시험·검사기관간에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가 외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시험·검사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인력, 시간, 경비 등을 절감하며 경쟁력을 제





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외국 현황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나라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강화, 상품의 명성제고 등을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해 오고 자기나라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꾸준히 홍보하여 상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교역을 원활히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호주에서는 NATA를 1946년에 비영리 협회 조직으로 설립한 이래 1994년 12월말 현재 1,683개 시험·검사기관을 공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A2LA(미국), NVLAP(미국), NAMAS(영국), TELARC(뉴

질랜드), HOKLAS(홍콩) 등과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영국에서는 NAMAS를 1966년에 정부기구로 설립하여 1994년 12월말까지 1,175개의 시험·검사기관을 공인기관으로 지정하고 NATA(호주) 등 11개국과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NVLAP(국가기관)과 A2LA(민간기관) 등 21개의 인정기구를 설립하여 각국의 인정기구와 개별적으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자기나라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측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동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발전시킨 영연방, EC, 북미 등 15여개국도 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무역에서의 이중검사를 해소함으로써

상품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인력,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하고 있으며, 자기나라의 주요 교역국과 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하여 국제유명인정기구와의 비교시험, 국내 시험·검사기관 정비 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는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nference : 국제시험소인정회의)를 통해서 정착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1992년 WELAC(Western Europe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서부 유럽 시험검사기관인정기구) 회원국간 체결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으로 동 제도를 급격하게 확산시킴으로써 인정제도의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 국내 추진현황

공업진흥청은 1978년 미국에서 개최된 제2차 ILAC 총회에 참석한 이래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와 관련한 국제회의에 계속 참가하여 관련정보 및 국제기준(ISO Guide 25 등)을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보급하여 왔다.

교역국간 상품의 통관시 이

중검사를 제거하고자 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게는 오히려 이 제도가 또 다른 기술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업진흥청도 1992년 3월 훈령을 통하여 동 제도를 도입 1992년 12월 제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근거 마련, 1993년 9월 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에 관한 운용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동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설립한 우리나라 시험·검사기관인 정기구인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 의해서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은 1995년 9월말 현재 방재시험연구소(FILK)를 비롯 18개 기관이다.

■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FILK

1986년 개소 이래 시험품질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온 FILK는 지난해 8월, KOLAS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품질매뉴얼 제·개정, 시험품질체계의 보완, 최신 시험 설비 및 표준실 설치, 전직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 등을 실시하여 온 결과, 9월 28일자로 화재저항도(내화시험), 연소성(난연성), 음향(차음, 흡음, 소음, 잔향), 열전도도, 연기감지기 감도,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온도, 자동차 및 트랙터 내장재의 연소성 시험 등 10개 항목에 대해 KOLAS 지정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FILK는 국립건설시험소, 해운항만청 등 국가 기관과 Lloyd's Register 등 해외선급으로부터 대항 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데 이어, 공인시험·검사기관(KOLAS)지정까지 획득하여 명실공히 시험검사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다시한번 그 공신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FILK는 앞으로도 KOLAS 지정품목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건축방화 및 소방안전제품의 품질향상과 국내 관련산업의 보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FILK)**

KOLAS 지정분야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시험항목	자동차 및 트랙터 등의 내장재료 연소성 시험	연기감지기 감도 시험	작동온도 시험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	건축내장재료의 난연성 시험	열전도율 시험	재료 및 구조에 대한 잔향성능 시험	재료 및 구조에 대한 흡음성능 시험	재료 및 구조에 대한 차음성능 시험	재료 및 구조에 대한 소음성능 시험	
분류	대분류 4. 열 및 온도측정					대분류 6. 음향 및 진동시험					
	중분류 4.05 직물과 관련 물질의 화재시험		중분류 4.03 화재방지 장치의 검사		중분류 4.04 건축자재 및 구조물의 화염검사		중분류 4.02 열특성의 조사		중분류 6.02 재료 및 구조의 음향특성		
	소분류 .03 기타시험	소분류 .04 기타시험	소분류 .04 화재시험	소분류 .01 연소성	소분류 .01 열전도도	소분류 .01 잔향	소분류 .02 흡음	소분류 .03 차음	소분류 .04 기타시험		